

대구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나316903 판결 [건물명도 등]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나316903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7. 19 선고 2023가단43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4. 4. 17.

판결선고 2024. 5. 22.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7. 19. 선고 2023가단43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93,660원에서 2023.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철, 판사 김준철, 판사 김승섭

별지